의 안 번 호	제 317 호
의결 (보고) 년 월 일	1995. 12. 28. (제 40 회)

심의의결사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5. 12. 11.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안번호	317

제출년월일 : '95. 12. 12.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 관리해 오던 농어촌간이급수시설이 '95. 8. 3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므로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골자

○ 관리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수립 (제3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실시 (제5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설치 및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 못하도록 조치 (제7조)

○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등에 대한 우선적 개·보수 (제9조)

○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급수조례의 범위내에서 요금징수 가능 등 (제11조)

3. 참고사항

○ 수도법제32조제2항

○ 간이상수도관리에따른조례준칙공문(도정58440-683호 '95. 6. 5일자)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 3 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 4 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성군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 12 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3 조(협의회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4 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③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16 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조례)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

관리번호	군·제 호

구분	항목	내역			
일반현황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읍·면 리 마을·부락			
	관리위원장	성명		전화번호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현황	총투자액(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 . .						
		시설개량		. . .						
		1차		. . .						
		2차		. . .						
		3차		. . .						
		수원이전		. . .						
		계								

시설현황								
	수원의 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내역	구분	재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1				심도: m	
			집수정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분	재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총연장(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계		㎜	m		㎜	m	
	소계		㎜	m		㎜	m	
	소계		㎜	m		㎜	m	
	총계			m			m	총계: m

급수현황				
	계획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 1일급수량: 리터
	현재	급수인구: 명	급수가구: 가구	1인당 1일급수량: 리터
	제한급수	1차: . . - .	2차: . . - .	3차: . . - . 계: 일간

수질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 .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공지	개량내용
	. .				
	. .				
	. .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 .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별지 제2호서식]

간이상수도 정기점검 일지 양식

관 리 번 호	시(군) 제 호	점검일자 : 19 . . .

조사 및 확인항목		검사일		특 기 사 항	조 치 결 과
		월	일		
시설의 청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로 파손				
오염원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취수시설점검	(수중)모타 펌프				
	전기 시설				
	수위 측정				
	수량 측정				
					시군담당자

주 1 : 수질검사 결과 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

[별지 제3호서식]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상 양식

(제5조 2항 관련)

관 리 번 호	시(군) 제 호	점검일자 : 19 . . .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자	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 맛,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			

< 별표 제 1 > 간이상수도 안내판(제7조 1항 관련)

간이상수도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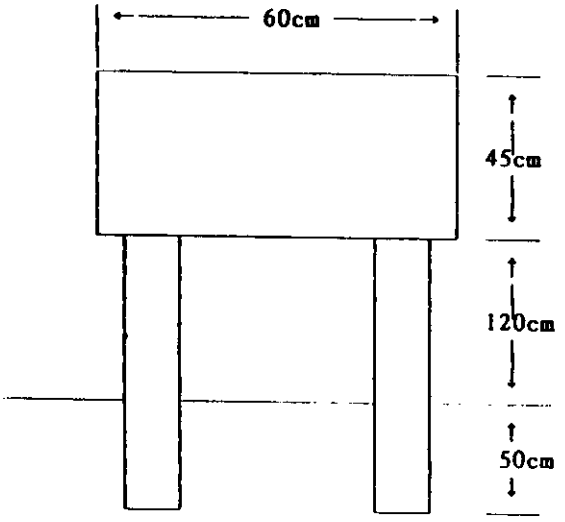

재질 및 두께 : 10㎜내외의 합판

바 탕 색 : 흰색

글 씨 : 청색

2. 내 용 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군 과 (TEL :)